

대학 자체평가 규정

- 제정 : 2010. 6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6. 3. 9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19. 11. 29.
- 개정 : 2020. 3. 1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 교”라 한다)의 교육.연구, 조직.운영, 시설.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.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.연구 영역
2. 조직.운영 영역
3. 시설.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평가시기) 평가는 매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평가기구

제7조(전담부서)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둔다.

② 전담부서장은 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0.3.18.>

③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삭제

2. 자체평가 역량향상

3. 평가결과의 공시

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및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 평가과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20.3.18.>

④ 삭제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교내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18.>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 심사

2.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
3. 평가위원회 운영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자체평가자문위원회) ① 총장은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체평가자문위원회(이하 자문위원회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처장, 교학처장, 학생지원처장, 경영관리실장, 정보전산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3.18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실무위원회)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3조(평가계획 수립) 평가과는 평가 해당 년도에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통지한다.

제14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(과)는 평가과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.

제15조(평가실시) ① 평가과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 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6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부(과)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평가결과 보고)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4-2-8 대학자체평가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